

1. 개정이유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72호, '20. 5. 19. 공포, '20.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별 농수산업자 정비(안 제2조)

부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파프리카, 인삼, 참다래, 감귤의 유통업자, 수출업자 등 품목별 농수산업자 중 유효하지 않은 농수산업자를 삭제하고,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자체검사업체로 명확화하여 향후 운영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 기준 정비(안 제5조제3항)

법률 개정으로 현행법 제6조제1항의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도 이와 동일하게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성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8~9월)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삼류·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를 “인삼류 자체검사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와 같다”를 “호 중 하나이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을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는 해당”으로,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농수산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업자”를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는 농수산업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 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 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 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 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u>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 업자</u> 2. 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u>인삼류 · 인삼제품류의 제조업 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u> 3. 참다래: 유통업자 4. 5. (생 략) <u>5의2. 감귤: 유통업자</u> 6. (생 략) 제5조(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 획서의 내용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 치계획서의 승인요건 중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판단기준은 다음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 ----- ----- ----- ----- ----- ----- ----- ----- ----- <u><삭 제></u> 2. ----- <u>인삼류 자체검사업체</u> <u><삭 제></u> 4.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현행과 같음) 제5조(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 획서의 내용 등)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

각 호와 같다.

1.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가 해당 농수산
물의 전체 농수산업자 수의 5
0퍼센트를 초과할 것

2.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
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50퍼센트를 초과할 것

-- 호 중 하나이다.

1.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는
해당 ----- 농수산업자 -

2.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는
농수산업자-----

